

예 산 총 칙

2016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419,300,000 | 42,579,000 |
| 일반회계 | 1,180,200,000 | 35,406,000 |
| 특별회계 | 239,100,000 | 7,173,000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62,200,000 | 4,866,000 |
|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| 101,200,000 | 3,036,000 |
| 상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| 61,000,000 | 1,830,000 |
| 기타특별회계 | 76,900,000 | 2,307,000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790,000 | 23,700 |
|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| 14,900,000 | 447,000 |
|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| 2,100,000 | 63,000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5,750,000 | 172,500 |
| 치수사업특별회계 | 1,800,000 | 54,000 |
|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| 1,720,000 | 51,600 |
| 청소사업특별회계 | 47,729,000 | 1,431,870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| 912,000 | 27,360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297,000 | 8,91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| 902,000 | 27,060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액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지방채발행은 별첨 "지방채발행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,316,015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공무원보수,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
2. 공공요금 및 제세, 급량비, 직무수행경비
3. 배상금, 국선번호료, 법정보상금
4. 지방채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
5. 재해대책비 및 복구경비
6. 반환금
7. 선거관련경비